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발의년월일	2014. 11. .
발 의 자	손홍섭 의원 외 10명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손홍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14. 11.
발 의 자 손홍섭, 권기만, 김복자
박세진, 안장환, 안주찬
윤영철, 정근수, 정하영
한성희, 허 복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대상(안 제2조)

나. 부과기준(안 제3조)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안 제4조)

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안 제6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제5항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조, 제6조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부과·징수)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청문)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 제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시장은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 ③ : 생략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생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들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법 제 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 사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오니 년 월 일 까지 당 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미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붙 임 : 1.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인)

【별지 제2호 서식】

경상북도 구미시장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 - □□□

세외수입
고지서
재증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종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신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청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총체납금액		

부과내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구미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한,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구미시청
O C R

수납의뢰서
(수납은행보관용)

세외
수입

납부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구미시장

수납인

구미시청
O C R

납부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번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과대상:

납부기한	까지	까지
과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 구미시장 귀하

수납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생년월일	
	③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부과기간		⑤납부통지서번호	
	⑥고지받은 일자		⑦과태료금액	
	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에 대한 불복사유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의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구미시장 귀하				

경상북도 구미시

문서번호 :

수 신 :

제 목 :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 1.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관련입니다.
- 2. 「지방자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	①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②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준		⑦ 이의제기일자	

- 첨부 :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구 미 시 장 (인)

법원장 귀하